

성남 도시관리계획(위례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성남 도시관리계획(위례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 이음(<http://eum.go.kr>)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2026. 6. 22.

성 남 시 장

1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한 사항

가. 위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
조서 : 변경없음

나. 위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
조서 : 변경

- 1) 용도지역·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·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- 2)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- 3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- 4) 건축물에 대한 허용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

가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

☐ 기정

구 분		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용지
건축물 용도	도면표시	G3
	허용 용도	- 건축법시행령 <별표 1>에 의한 다음의 용도(건축 연면적의 50%이상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축하여야 한다.) - 문화 및 집회시설(공연장 및 관람장 제외) - 노유자시설
	불허용도	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건폐율		60% 이하
용적률		160% 이하
최고층수		3층 이하
해당블록		문화3

☐ 변경

구 분		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용지
건축물 용도	도면표시	G3
	허용 용도	- 건축법시행령 <별표 1>에 의한 다음의 용도 - 문화 및 집회시설(공연장 및 관람장 제외) - 노유자시설
	불허용도	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건폐율		60% 이하
용적률		160% 이하
최고층수		3층 이하
해당블록		문화3

☐ 변경사유서

도면번호	구분	변경내용	변경사유
G3	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용지	G3 : 건축물 용도별 면적 제한 폐지	주민들의 복지수요 충족 및 효율적인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함

5)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 조서: 변경

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

기 정		
제8장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		
제16조 (건축물의 허용용도, 건폐율, 용적률, 높이)		
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용지의 건축물용도는 <표 II-8-2>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.		
구 분		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용지
건축물 용도	도면표시	G3
	허용 용도	- 건축법시행령 <별표 1>에 의한 다음의 용도(건축 연면적의 50%이상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축하여야 한다.) - 문화 및 집회시설(공연장 및 관람장 제외) - 노유자시설
	불허용도	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건폐율		60% 이하
용적률		160% 이하
최고층수		3층 이하
해당블록		문화3

변 경

제8장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

제16조 (건축물의 허용용도, 건폐율, 용적률, 높이)

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용지의 건축물용도는 <표Ⅱ-8-2>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.

구 분		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용지
건축물 용도	도면표시	G3
	허용 용도	• 건축법시행령 <별표 1>에 의한 다음의 용도 - 문화 및 집회시설(공연장 및 관람장 제외) - 노유자시설
	불허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건폐율		60% 이하
용적률		160% 이하
최고층수		3층 이하
해당블록		문화3

6)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다. 지형도면 고시도: 도면게재 생략(변경없음)